

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조치(주요문서 종합)

《정부지침 관련 사항》

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철저 요청('21.2.17, 농산팀-375)

○ 주요내용

〈 유통인 예방수칙 〉

- 도매시장(경매장, 중도매인 점포 등) 내 마스크 착용 철저
- 경매장 내 흡연 금지
- 5인 이상 모임 및 식사 금지 : 경매장, 중도매인점포 등
-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접촉(의심)자 : 방역당국 공사에 즉시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
- 자가격리대상자 · 코로나19 검사자 : 자가격리 해제 시 음성 판정시까지 출입 금지

 보건복지부		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 자 료</h2>		
배 포 일	2021.02.13. / (총 46 매)		담당부서	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
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	팀 장	양 정 석	전 화	044-202-1711
	담당자	박 영 운		044-202-1714
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	과 장	김 성 훈	전 화	044-200-2293
	담당자	유 황 섭		044-200-2295
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	팀 장	조 우 경	전 화	044-202-1720
	담 당 자	박 은 경		044-202-1721
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	과 장	송 은 철	전 화	02-2113-7660
	담당자	유 효 연		02-2133-7669
경기도 질병정책과	과 장	임 순 택	전 화	031-8008-5420
	담당자	최 문 갑		031-8008-5422

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.5단계로 조정

- 수도권 음식점·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,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-
-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,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-
-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-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정세균)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▲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준수 철저 ('21.4.6, 유통총괄팀-682)

○ 주요내용

-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-6604(2021. 4. 5.)호, 「국내근로자공급 사업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」 등
- 고용노동부 가락시장 점검 결과('21.4.1.)

<방역수칙 미준수 사항>	
○	마스크 미착용(일명 '턱스크' 포함)
-	작업, 지게차(전동차 포함) 운전 시 마스크 미착용 또는 턱에 걸침
-	흡연 후 마스크 미착용 또는 턱에 걸침
○	5인 이상 사적모임
-	시장 내 매점에서 5인이상 모여 음식 섭취 및 음식판매자 마스크 미착용

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('21.4.28, 유통총괄팀-827)

○ 주요내용

마스크착용 의무화	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타인과 거리가 2m 이상 되지 않는 경우
교통시설 이용	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
직장근무	부서별 인원의 1/3 이상 재택 근무 실시
	점심시간 시차 운영, 모임 및 회식 자제
	밀집 사업장은 주기적 소독,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 의무화

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철저('21.5.13, 유통총괄팀-896)

○ 주요내용

- 각 도매시장법인은 유통인과가락시장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통 종사자들의 마스크 상시 착용(도매시장 밖 포함) 및 경매 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요청

※ 2021. 4. 1. 고용노동부에서가락시장 방역관리를 불시 점검한 결과, 마스크 미착용(일명 '턱스크'), 매점에서 5인 이상 모여 음식 섭취하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

《공사 추가 조치사항》

- **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지시('21.5.20, 유통총괄팀-928)**
 - 주요내용
 - 경매장 내 흡연 행위, 마스크 미착용 등을 예방·적발·퇴거(계도) 할 수 있는 방역관리 직원을 금일(2021.5.20.) 거래 시부터 부류별로 2명 이상 배치(필요시 단기 노동자 채용가능하고 방역관리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(조끼, 어깨띠 등) 착용), 그 결과를 우리공사(유통총괄팀)로 보고 요청

- **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거래 준수사항 특별지시(재차)('21.5.26, 유통총괄팀-976)**
 - 주요내용
 - 가락시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내 유통인(법인 직원, 중도매인, 하역노조 등 시장종사자) 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**확진자 거래 품목이 포함된 부류(과일류, 채소류) 전품목에 대하여 상황 안정 시까지 농안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2021.5.23.(일) 저녁 경매부터** 코로나19 검사 결과, 음성 판정자에 한하여 **경매 참여가 가능함을 재차** 통보

- **가락시장 유통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요청('21.6.2, 유통총괄팀-1028)**
 - 주요내용
 -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 계획과 관련하여 2분기에는 **65~74세 어르신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하고, 잔여분 백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종도 가능. 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되는 유통 종사자는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으로** 확산 방지 및 수도권 농수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

□ **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철저 조치명령('21.6.3, 유통총괄팀-1052)**

○ 주요내용

- 도매시장법인(공판장), 중도매인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로서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음. 이와 관련하여, 각 도매시장법인(공판장), 중도매인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방지,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 및 격리 대상자 등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
- 위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귀책사유가 있어 가락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에 손해(시장사용료 등)가 발생한 경우, 우리 공사는 민법 제750조 (불법행위의 내용)와 관련하여 도매시장법인(공판장), 중도매인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양지

□ **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거래 준수사항 지시(추가)('21.6.4, 유통총괄팀-1067)**

○ 주요내용

-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경매 시작 전에 미리 상품을 감식하시고, 상품 감식(별) 시(특히 깻잎 냄새를 맡을 때, 과일 단독 시식할 때 등)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. 위반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(거래질서의 유지) 제1항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

□ **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(1차) 시행 통보('21.6.4, 유통총괄팀-1054)**

○ 주요내용

- 코로나 관련 방역당국 관리자 신고 철저
 - 자가격리 대상자, 능동감시자로 통보받은 경우 반드시 공사에 신고
 - ※ 도매시장법인 : 유통총괄팀, 중도매인(종업원 포함) : 농산팀, 하역노조(물류개선팀)
 - 개인 방역 준수 철저 및 관리 강화
 - 거래참가자 마스크, 안면보호대 동시 착용 의무화(6.4 경매시부터)
 - 동시 착용 하지 않을 경우 거래 참여 불가

□ **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관련 합동단속 안내(별도 안내)**

○ 주요내용

- 민생사법경찰관이 우리공사, 유통인(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조합, 하역노조)과 합동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을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
- 가락시장 유통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방역지침(KF94 마스크 상시 착용, 5인 사적 모임 금지 등)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유통인별 합동단속 인력 제출 요청

□ **[긴급] 코로나19 확진점포, 인근점포, 통로 폐쇄 및 관리기준 알림(수정)**
(가락시장 코로나19 대책본부)

○ 주요내용

코로나19 확진점포, 인근점포, 통로 폐쇄 및 관리기준

가. 확진 점포(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포)

- 폐쇄기간 : **최초 검사일(발생일)로부터 4일**
- 운영지침 : 보건당국 자가격리 분류자는 **2주 동안 시장 출입금지**
- ※ 밀접접촉자 및 능동감시자(업무배제자)로 분류된 유통인이 시장 출입 시, 농안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이므로 운영지침 절대 준수 바람(보건당국의 형사고발 등은 별도 검토)

나. 인근 점포(확진점포 포함 6개 점포 : 확진자 좌·우 및 맞은편 점포 3곳)

- 폐쇄기간 : **최초 검사일(발생일)로부터 3일**
- 운영지침 : 보건당국 자가격리 분류자는 **2주 동안 시장 출입금지**
- ※ 음성 판정자에 한해 경매 참여 가능
- **시장출입기준 : 코로나19 2회 검사 후 음성 판정(1회 검사 후 48시간 이후 2회 검사)**

다. 동일 통로 점포

- 폐쇄기간 : **당일 1일 폐쇄**
- 운영지침 : 확진자 발생 당일 즉시 **코로나 1회 검사 의무화**

- 확진자 발생 시 확진점포 및 인근점포의 모든 종사자 명단(일용직, 개인 배송업자 포함)을 아래 양식으로 즉시 비상대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※ 제출방식 : 공사 유통본부 팩스로 제출(02-3435-0442))

소속	상호	구분(고용형태)	성명	연락처(휴대폰)	생년월일
도매법인, 조합명		ex)직원, 일용직			

‘잠시 멈춤’ 캠페인 동참(별도 안내)

- 사적모임 자제(노래방, 음식점 이용 등), 밀집도 감소 노력(횟수, 인원 등)
-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통인 대상으로 잠시 멈춤 캠페인 참여 유도

경매 참가자와 배송원(하역노조원, 배송직원) 분리 조치 시행 철저 ('21.6.16, 유통총괄팀-1151)

○ 주요내용

- 경매거래시 밀집과 밀접 현상 완화를 위해 해당 품목 경매가 어느 정도 진행 후 하역노조 및 중도매인 직접배송 직원이 배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매 현장을 관리(경매 참가자와 배송원 분리) 해주시기 바람
- 예) 상추 경매시 상품진열 4열 경매 진행 후 배송을 위한 하역노조 및 배송원 배송 시작